



Department of Treasury  
Internal Revenue Service

[REDACTED]

[REDACTED]  
[REDACTED]  
[REDACTED]

통지번호 CP161  
파세 기간 2008년 3월 31일  
통지 일자 2009년 2월 23일  
고용주 ID 번호 [REDACTED]  
연락처 [REDACTED]  
귀하의 발신자 ID [REDACTED]  
페이지 1 / 4

귀하에게 2008년 3월 31일 납기분 미납세가 있습니다.

**납부할 금액: \$28,964.29**

국세청 기록에 따르면 귀하는 2008년 3월 31일에 종료되는 과세 기간에 대한 미납세액이 있습니다 (Form 1120-F).

#### 청구내용 요약

귀하의 세액	\$390,331.00
귀하의 납부액	- 390,331.00
미신고 과태료	11,783.16
미납 과태료	9,164.68
적정 추정세 미납 과태료	137.90
이자 부과액	7,878.55
<b>2009년 3월 16일까지 납부해야 할 금액</b>	<b>\$28,964.29</b>

#### 귀하가 즉시 취해야 할 조치

##### 즉시 납부

- 추가 과태료와 이자가 부과되지 않도록 납부금액 \$28,964.29를 2009년 3월 16일까지 납부하십시오.

뒷 면에 계속...



통지번호 CP161  
통지 일자 2009년 2월 23일  
고용주 ID 번호 [REDACTED]

#### 납부

수표나 환의 수취인은 United States Treasury로 지정하십시오.

- 지급 수단과 서신에는 귀하의 고용주 ID 번호, 과세 기간 (2008년 3월 31일) 및 양식 번호(1120-F)를 기입하십시오.

**2009년 3월 16일까지  
납부할 금액**

**\$28,964.29**

INTERNAL REVENUE SERVICE

[REDACTED]  
[REDACTED]

0000 0000000 00000000 0000

과세 기간 2008년 3월 31일  
통지 일자 2009년 2월 23일  
고용주 ID 번호 [REDACTED]  
페이지 2 / 4

#### 귀하가 즉시 취해야 할 조치 - 계속

#### 즉시 납부 - 계속

- 전액을 납부할 수 없으면, 현재 가능한 금액 만큼 납부하시고, [REDACTED] 번으로 전화하여 잔액 납부를 위한 귀하의 선택에 관하여 상의하십시오.

#### 귀하께서 오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 귀하의 납세관련 사항과 세금 보고서 사본을 준비하여 저희와 검토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고 [REDACTED] 번으로 전화하십시오. 귀하는 우편으로 연락할 수도 있습니다. '연락처 정보' 부분에 내용을 기입하고 잘라내어 이 잘라낸 부분을 서신이나 문서에 동봉하여 저희에게 송부하여 주십시오.

#### 귀하가 연락하지 않을 경우

2009년 3월 16일까지 \$28,964.29를 납부하지 않으면, 이자 금액이 증가하고 추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2008년 3월 31일자로 종료되는 과세 기간에 대하여 귀하의 계좌에 납입 처리된 금액

귀하가 납부한 세금 총액이 아래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틀리거나 누락이 있으면 [REDACTED] 번으로 전화 주십시오.

수납 일자	금액
7/16/07	\$17,000.00
9/17/07	50,000.00
12/17/07	61,483.00
12/24/07	261,848.00
총 납입액	\$390,331.00

## 연락처 정보

귀하의 주소가 변경되었으면 [REDACTED] 번으로 전화하거나 www.irs.gov 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 귀하가 서신을 동봉하는 경우 여기를 체크하십시오. 모든 서신에는 귀하의 고용주 식별 번호 [REDACTED], 과세 기간 (2008년 3월 31일) 및 양식 번호(1120-F)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오전  
 오후

오전  
 오후

기본 전화번호

통화 가능 시간

추가 전화번호

통화 가능 시간



과세 기간 2008년 3월 31일  
통지 일자 2009년 2월 23일  
고용주 ID 번호 [REDACTED]  
페이지 3 / 4

## 과태료

국세청은 법률에 따라 해당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미신고

신고일	지연 개월 수	미납액	과태료 요율	금액
1/15/09	1	\$261,848.00	5.0%	\$11,783.16

기한을 경과하여 세금 보고서를 제출하면, 미납 세금에 대하여 월 5.0%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최대 부과 금액은 5개월분 또는 미납금액의 25%까지입니다. 신고 기한이 2008년 12월 31일 이전인 세금 보고서에 대하여, 신고 기한 경과일수가 60일을 초과할 경우 최소 \$100 또는 미납세액의 100% 중에서 적은 금액이 부과됩니다. 한 달이 부족하더라도 1개월로 간주합니다. (내국세법 제 6651항)

### 미납

신고일	지연 개월 수	미납액	과태료 요율	금액
1/15/09	1	\$261,848.00	0.5%	\$9,164.68

납기 후에 세금을 납부하면, 미납 세금에 대하여 월 0.5%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태료 최대 금액은 미납금액의 25%입니다. 한 달이 부족하더라도 1개월로 간주합니다. (내국세법 제 6651 호)

### 적정 추정세 미납

납기	수납 일자	지연 일수	과태료 요율	과태료 요율 인수	미납액	과태료 금액
7/15/07	9/15/07	62	8.0	0.00021918	\$10,148.25	\$137.90

귀하가 세금을 정확히 추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이 과태료는 기업이 납부할 세액이 \$500 이상이고 기한 내에 납부한 총액이 요구된 금액 미만일 경우에 부과합니다. 납득할 만한 이유에 대한 절차가 기업 추정세 과태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추정세 과태료가 축소 또는 면제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추가 정보는 귀하의 과세 연도에 해당되는 Form 2220 및 그 지침을 참고하십시오. (내국세법 제6655항)

### 과태료의 면제 또는 삭감

국세청은— 경제적 어려움, 가족의 사망, 자연재해로 인한 재무 기록의 손실 등이— 상황으로 인하여 적시에 납세자 의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합니다.

국세청이 귀하의 과태료 부과액을 면제 또는 삭감해 주도록 고려해 주기를 바라시면 아래 조치를 취하십시오:

- 재고 할 과태료 부과액의 종류를 명시하십시오 (예: 2005년도 지연 신고 과태료).
- 각 과태료 부과액에 대하여 재고해야 할 이유를 설명하십시오.
- 귀하의 진술서에 서명하고 저희에게 우송하십시오.

저희가 귀하의 진술 내용을 검토한 후, 귀하의 설명 내용이 과태료를 삭감 또는 면제할 합리적 이유가 되는지 여부를 알려드립니다.

과세 기간 2008년 3월 31일  
통지 일자 2009년 2월 23일  
고용주 ID 번호 [REDACTED]  
페이지 4 / 4

## 과태료 - 계속

### IRS 의 잘못된 서면 조언으로 인해 발생한 과태료의 면제

IRS의 서면 조언을 따랐는데 귀하의 과태료가 발생하였다면, 다음 기준에 해당될 경우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 귀하가 특정 사안에 대하여 IRS에 서면 조언을 요청했는지 여부
- 귀하가 완전하고 정확한 정보를 IRS에 제공하였음
- 귀하가 IRS로부터 서면 조언을 받았음
- 귀하가 서면 조언을 따랐는데 그 조언 때문에 과태료가 부과되었음

IRS 의 잘못된 서면 조언 때문에 발생한 과태료의 면제를 요구하려면 '환급 청구 및 경감 요구서' (Form 843)를 작성하여 귀하가 세금 보고서를 제출한 IRS 서비스 센터로 제출하십시오. 이 양식을 원하거나 귀하의 해당 IRS 서비스 센터를 찾으려면 [www.irs.gov](http://www.irs.gov) 를 이용하거나 [REDACTED] 번으로 전화하십시오.

## 이자 부과액

기간	금액
총 이자	\$7,878.55

국세청은 법률에 따라 세금 보고서 제출 마감일부터 세액 완납일까지 미납세금에 대한 이자를 부과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자는 해당되는 경우, 과태료를 포함하여 미납금액이 있는 한 부과됩니다. (내국세법 제 6601 항)

미납 세금, 과태료 및 이자(납부할 금액)를 이자율 인수로 곱하여 각 분기에 납부할 이자액을 산정합니다.

기간	이자율
2008. 4. 1 ~ 2008. 6. 30	6%
2008. 7. 1 ~ 2008. 9. 30	5%
2008. 10. 1 ~ 2008. 12. 31	6%
2009. 1. 1 일 이후	5%

## 추가 정보

- 참고 사이트: [www.irs.gov/cp161](http://www.irs.gov/cp161).
- 세무 양식이 필요할 경우 1-800-TAX-FORM (1-800-829-3676)으로 전화하십시오.
- 귀하의 소기업이 어떤 연방 기관으로부터 과도한 준법 또는 집행 조치를 받았다고 생각되면 소기업청(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옴부즈맨에 민원을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귀하가 선택할 수 있는 조치와 '소기업규제완화이행촉진법' (Small Business Regulatory Enforcement Fairness Act)에 관하여 알아보려면 [www.sba.gov](http://www.sba.gov)를 방문하여 키워드 "ombudsman"을 검색하십시오.
- 본 통지서는 귀하의 기록 서류로 보관하십시오.

도움이 필요하면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에게 연락 주십시오.